도메인이름등사용금지

[서울지법 2000. 9. 8. 2000가합6471]



【판시사항】

- [1] '(인터넷주소 1 생략)'이라는 도메인 네임으로 접속되는 홈페이지에서 홈쇼핑업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경우,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(나)목 소정의 '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'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
- [2] '(인터넷주소 1 생략)'이라는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고 홈쇼핑업무와 유사한 웹메일카드서비스 업무를 준비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준비행위로 보아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

【판결요지】

- [1] '마스타카드(MasterCard)'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마스타카드 인터내셔널 인코포레이티드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이고 , 위 회사가 '(인터넷주소 2 생략)'이라는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이용한 홈페이지에서 홈쇼핑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과 신용카드업체가 인터넷 홈쇼핑업을 함께 영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, '(인터넷주소 1 생략)'이라는 도메인 네임으로 접속되는 홈페이지에서 홈쇼핑업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하게 된다면 이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(나)목의 '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'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
- [2] '(인터넷주소 1 생략)'이라는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고 홈쇼핑업무와 유사한 웹메일카드서비스 업무를 준비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준비행위로 보아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.

【참조조문】

- [1] [1]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(나)목
- [2]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(나)목제4조 제1항

【전문】

- 【원 고】마스타카드 인터내셔널 인코포레이티드 (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종합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범래 외 4인)
- 【피 고】 피고 (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한승헌 외 4인)
- 【항소심판결】서울고법 200 1. 8. 22. 선고 2000나51560 판결

【주문】

1

- 1. 피고는,
- 가.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문자를 피고의 인터넷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,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나.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문자를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- 2. 피고는 원고에게 한국전산원 산하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1999. 6. 7. 등록한 '(인터넷주소 1 생략)' 도메인 네임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라.
- 3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- 4.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,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.
- 5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

【청구취지】주문 제1, 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문자를 피고의 상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판결.

[이유]

】1. 인정 사실

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제1호증의 1 내지 5, 갑 제2, 3호증, 갑 제4호증의 1, 2, 갑 제5호증, 갑 제6, 7호증의 각 1, 2, 을 제1호증, 을 제2호증의 1,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,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 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, 달리 반증이 없다.

가. 원고 상표 및 서비스표의 주지·저명성

- 원고는 별지 제3, 4목록 기재 각 상표 및 서비스표를 등록하고 신용카드사업을 하고 있는 미합중국 법인으로서, 원고의 상호 중 일부이면서 각 등록상표 및 서비스표의 문자부분을 구성하는 '마스타카드(MasterCard)'는 원고의 영업과 상품을 표창하는 것으로 국내·외에 널리 알려져 있다.
 - 나. 원고의 인터넷 홈쇼핑업 운영
- 원고는 '(인터넷주소 2 생략)'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등록권자로서, 위 도메인 네임을 이용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용카 드 관련 업무와 함께 전자상거래의 일종인 홈쇼핑업을 영위하고 있다.

다.

피고의 도메인 네임 등록

- 피고는 1997. 4. 11. 한국전산원 산하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도메인 네임 '(인터넷주소 3 생략)', 기관분류 '기타 통신서비스 : 기관/인물명 '웹메일'로 하는 인터넷 도메인 네임 등록을 마쳤고, 1999. 6. 7. 도메인 네임 '(인터넷주소 1 생략)', 기관분류 '기타 통신서비스 : 기관/인물명 '웹메일'로 하는 인터넷 도메인 네임 등록을 마쳤다.
 - 라. 피고의 웹메일서비스 개발
- (1) 피고는 1996. 6. 30.경 네트웍(NETWORK)상의 이메일(EMAIL)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, 매스미디어의 불특정 다수에 대한 대량의 정보제공 및 광고·홍보가 아닌 네트웍상의 다수와 개인, 일대일 방식 등으로 인지될수 있으며 필요에 의해서 원하는 특정인에게 주어지는, 쌍방향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포탈메일서비스인 이른바 '웹메일서비스'를 개발완료하고, 이를 소외 매일경제신문사, 삼성물산 주식회사, 한국창업지원단이 공동개최한 '전자상거래(EC) 아이템 공모전'에 출품하여, 그 무렵 우수상을 수상하였다.
- (2) 위 공모 전에 피고가 제출한 아이템 제안서(을 제2호증의 2)에 의하면, 피고의 아이템은 크게 웹메일서비스(정보제 공서비스), 메일링 디렉토리서비스(커뮤니티), 광고사업, 메일링 호스팅사업, 웹메일 리서치, 웹메일카드서비스(전자 상거래), 웹메일솔루션사업, 웹메일 이동통신문자제공서비스의 8개의 응용분야로 세분되고, 그 중 웹메일카드서비스는 "쇼핑몰의 상품판매촉진에 단순한 컨셉을 벗어나 고객(회원)이 기억할 수 있도록 친인척의 생일 또는 기념을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기억해서 축하카드를 보내는 서비스, 생일·기념일, 특별한 날을 기억해서 이메일로 원하는 상대에게 보내지는 카드 서비스와 일년중 한번쯤 고민하는 생일선물에 관한 선물컨설팅 또는 선물카운셀러 이메일서비스를 접목시킨 카드 메일서비스이다.

- 유통업체와 협력하여 쇼핑전자카탈로그 제작 발송 및 이벤트상품, 할인상품, 공동구매 이메일정보서비스를 한다(추후 경매에도 활용할 수 있다)"로 소개되고 있으며, 특히 다른 응용분야와는 달리 위 웹메일카드서비스와 관련하여 '(인 터넷주소 1 생략) 서비스 준비중'이라는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.
 - 마. 홈페이지의 내용 및 변경
- (1) 피고가 초기에는 '(인터넷주소 1 생략)' 도메인 네임을 이용한 홈페이지를 이미 자신이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던 '(인터넷주소 3 생략)' 도메인 네임을 이용한 홈페이지 내용을 그대로 옮겨와 운영하였는데, 그 홈페이지의 내용 중 웹메일샵(webmailshop)이라고 표기된 부분을 지정하여 당해 페이지를 열어보면, 현대 디지털 카메라(QV100, QV10A), 산내들 무선 헤드폰(HOBBY-G), IMF다용도 충전기, 카라얀 CD전집, 골프볼 Spalding MOLITOR 3타스 등의 제품이 그 제품사진 및 제품설명, 소비자가격, 판매가격과 함께 나타나고, 위 각 제품을 소개하는 부분마다 '주문수량 1개', '바구니에 넣기'라는 부분이 있으며, 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'장바구니 보기'와 '계산하기'라는 부분이 있었다
- (2)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후 '(인터넷주소 1 생략)' 도메인 네임의 홈페이지에서 웹메일샵(webmailshop)페이지 부분을 삭제하였고, 현재는 위 도메인 네임을 곧바로 'mailhosting.net/webhosting/index.html'에 연결하여 사용함으로써 위 '(인터넷주소 1 생략)'도메인 네임으로 접속을 하여도 그 표기가 컴퓨터 모니터 화면상에는 나타나지 않는다.

그러나 인터넷 전문가들에게는 그 홈페이지의 접속방법 및 내용의 변경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, 더구나 피고 자신이 홈페이지 개설 및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문가로서 언제든지 이 사건 도메인 네임으로 접속되는 홈페 이지에서 웹메일카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2.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가. 당사자의 주장

- 원고는, 피고가 원고의 주지·저명한 상표·서비스표와 유사한 인터넷 도메인 네임 '(인터넷주소 1 생략)'(이하 '이 사건 도메인 네임'이라고 한다)을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등록하여 그 홈페이지에서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홈쇼핑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(이하 '법률'이라 한다) 소정의 상품주체혼동 내지 영업주체혼동 행위에 해당하므로, 그 금지 및 예방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,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웹메일솔류션이라는 웹메일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는 영업을 할 뿐이지 이 사건 도메인 네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홈쇼핑업을 영위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영업 또는 상품과 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다툰다.나. 판 단
- (1) 먼저, 피고가 과연 이 사건 도메인 네임을 이용하여 홈쇼핑업을 영위하였는가에 대하여 보건대,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메인 네임에 의하여 접속되는 변경 전 홈페이지는 그 내용이 피고가 등록한 '(인터넷주소 3 생략)"의 홈페이지 내용과 동일한 사실, 그 중 웹메일샵(webmailshop)이라고 표기된 부분을 지정하여 페이지를 열어보면, 각 종 제품의 사진과 설명, 가격 등의 정보가 나오고, '주문수량 1개', '바구니에 넣기'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, 위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가 실제 위 각 제품을 판매하는 홈쇼핑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.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(2) 그러나 '마스타카드(MasterCard)'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이고, 원고가 '(인터넷주소 2 생략)'이라는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이용한 홈페이지에서 홈쇼핑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, 신용카드업체가 인터넷 홈쇼 핑업을 함께 영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, 피고가 이 사건 '(인터넷주소 1 생략)'도메인 네임으로 접속되는 홈페이지에서 홈쇼핑업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하게 된다면 이는 법률 제2조 제1호 (나)목의 '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'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.

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도메인 네임을 등록할 무렵 소외 매일경제신문사 등이 개최한 공모전에 '웹메일서비스'라는 아이템을 출품하였고, 그 아이템 중 웹메일카드서비스는 이 사건 도메인 네임으로 접속되는 사이트에서 준비중임을 밝히고 있는 점, 이 사건 도메인 네임의 등록시기가 피고가 위 공모전에 웹메일서비스 아이템을 제안한 때와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피고는 이 사건 도메인 네임을 피고가 구상한 웹메일서비스 중 웹메일카드서비스를 위하여 등록한 후 그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, 한편위 웹메일카드서비스는 쇼핑몰의 상품판매촉진에 단순한 컨셉을 벗어나 고객이 기억할 수 있도록 친인척의 생일 또는 기념을 기억해서 축하카드를 보내는 서비스로서 각 기념일의 선물에 관한 선물컨설팅 또는 선물카운셀러 이메일서비스를 접목시킨 것으로, 유통업체와 협력하여 쇼핑전자카탈로그 제작 발송 및 이벤트상품, 할인상품, 공동구매 이메일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, 이는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홈쇼핑업무와 극히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(단지 피고의 웹메일카드서비스는 일반 인터넷 홈쇼핑과는 달리운영자가 먼저 웹메일을 통해 고객에게 상품정보를 제공하여 구매의욕을 자극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

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고 웹메일카드서비스 업무를 준비한 행위는 원고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의 준비행위라고 할 것이고,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후에 홈쇼핑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될 만한 내용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, 인터넷 전문가들에게는 그 홈페이지의 접속방법 및 내용의 변경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, 더구나 피고 자신이 홈페이지 개설 및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문가로서 언제든지 이 사건 도메인 네임으로 접속되는 홈페이지에서 웹메일카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구체적인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, 원고는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률 제2조 제1호 (나)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를 하고자 하는 피고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.

다.

소결론

따라서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문자를 피고의 인터넷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,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문자를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, 원고에게 이 사건 도메인 네임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(한편 원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문자를 피고의 상호로 사용하지 말 것을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, 피고가 별지 제2목록 기재의 각 문자를 피고의 상호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, 그 사용의 가능성이나 우려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그 이유 없다).

3. 결 론

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판사 정장오(재판장) 남기정 남기정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